

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10. 13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10. 13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6호)

다 2006. 10. 24 :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
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가 제안이유

- 2006. 2. 5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2. 6. 15 시행한 「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」의 [자원봉사활동기본법]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 주요내용

- 1)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(안 제7조)
- 2)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(안 제9조)
- 3)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(안 제14조)
- 4)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(안 제17조)

다 관계법령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- 민법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,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7660호, 2005. 8. 4 공포 2006. 2. 5 시행) 시행됨에 따라 「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」를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규정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」로 변경하고,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(안 제5조)
 -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,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
-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(안 제14조)을 설정
 -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,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의 날과 그날부터 1주간인 자원봉사주간에 기념행사,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,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격려, 대중매체 활동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시민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
- 그 외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, 조직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